



구보

선 람	기관의 장

제1863호 | 2026년 5월 11일 월요일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고 시

- 미추홀구 고시 제2026-60호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공동3BL』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2

공 고

- 미추홀구 공고 제2026-792호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 수취 불분명 공시송달 공고 3
- 미추홀구 공고 제2026-795호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등록사항 공시송달 공고 4
- 미추홀구 공고 제2026-797호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강제이전 최고반송분 공시송달공고 5
- 미추홀구 공고 제2026-801호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 6
- 미추홀구 공고 제2026-805호 공인 폐기 공고 7
- 미추홀구 공고 제2026-807호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주민공람 공고(송의동289의1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9
- 미추홀구 공고 제2026-838호 건축허가 취소 전 청문 실시 및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0

회 란

| 발행: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리로 95) | 편집: 미디어홍보실

고 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6 - 60호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공동3BL』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학익1블록 내 공동3BL을 사업부지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제15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5.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1. 사업명칭: 용현.학익1블록 1구역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주)디씨알이
3. 사업시행위치 및 면적규모
 -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공동3BL
 - 나. 대지면적 : 91,275.60m²
 - 다. 규 모 : 지하2층 ~ 지상49층, 주9개동 및 부속15개동
공동주택(1,949세대), 부대 및 복리시설
5. 주요변경 내용
 - 지하주차장 PC 슬래브 적용에 따른 일부 기둥 및 벽체 규격 변경
 - 다목적체육관 PT 적용에 따른 기둥 규격 변경
 - 기초 파일 두께 변경
6. 사업계획(변경)승인일: 2026. 4. 30.
7. 사업시행기간 : 사업계획승인일 ~ 2030. 2. 28.
8. 의제처리사항
 -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공 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792호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 수취불분명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1조(변경등록), 자동차등록령 제22조(변경등록 신청), 제13조(말소등록) 제84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확인된 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의하여 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수취불분명 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명: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 수취불분명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5. 4. ~ 5. 18.
3. 공고대상: 총 3건

연 번	차량번호	납부자명	주소	공고사유	비고
1	33무37**	지엠**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108 ***	폐문부재로 인한 수취불분명	법인주소변경 지연
2	854서35* *	홍*숙	인천 미추홀구 재념이길 130 ***	폐문부재로 인한 수취불분명	임시운행반납 지연
3	임5538**	이*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150 ***	폐문부재로 인한 수취불분명	임시운행반납 지연
4	77모63**	김태*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 68 ***	폐문부재로 인한 수취불분명	수출이행신고 지연

4. 내용: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 수취불분명 공시송달 공고
5. 문의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032-880-4548)

2026년 5월 4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 - 795호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등록사항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거 양도인에 의한 이전등록이 접수되어 법원확정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사실을 양수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강제이전 등록사항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5. 6. ~ 2026. 5. 21.까지
3. 공고대상

차량번호	양도인 (원고)	양수인(피고)		비고
		성명	주 소	
인천98바4610 ⇒ 98소2108	경*운수	조*수	전남 광양시 광양읍 남문3길***	인천지방법원2024가단12056 판결 판결선고: 24. 12. 19. 확 정: 25. 2. 1. 이전신청: 26. 3. 16 강제이전: 26. 4. 20.

4. 공고내용

-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판결에 의한 양도인의 이전등록 신청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 제5호 및 제3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동차 소유권을 강제이전 등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양수인(피고)께서는 자동차보험 가입, 자동차 정기검사 등 소유권 이전등록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시어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반 법규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문의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032-880-4548)

2026년 5월 6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 - 79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에 의거 법원 확정판결에 의한 양도인의 이전등록 신청으로 양수인에게 이전등록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강제이전 최고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5. 6. ~ 2026. 5. 21.까지(15일간)
3. 공고대상

차량번호	양도인 (원고)	양수인(피고)		강제이전사유
		성명	주 소	
인천99아8826	(주)신진물류	박*우	인천 서구 중봉대로586번길 **	인천지방법원 2025가단216698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청구의 소

4. 공고내용

-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위 공고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 시 「자동차등록령」 제27조 제3항에 따라 2026. 5. 22.(금) 이후 소유권 강제이전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032-880-4548)

2026년 5월 6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801호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고시 제2024-189호(2024.11.4.), 제2026-36호(2026.3.23.)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이 완료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6. 5. 11.

인 천 광 역 시 미 추 홀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540-1번지 외 3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 명칭: 수봉마을 공립어린이집 조성사업

3. 사업의 규모

- 대지면적=751.3㎡, 노유자시설(공립어린이집)
 - 건축면적: 335.98㎡(건폐율 42.72%), 연면적: 697.1㎡(용적률 87.01%), 지하1층/지상3층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리로 95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6. 4. 30.

6. 공사완료일: 2026. 4. 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 - 805호

공인 폐기 공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인 조례」 제10조에 따라 폐기한 공인을 같은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5.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1. 폐기 사유: 「미추홀구 공용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
2. 폐기연월일: 2026. 5. 7.
3. 공인명 및 인영: 붙임 참고

폐기 공인 목록

연번	공 인 명	규격 및 서체	인 영	폐기연월일	등 록 근 거
1	인천광역시미추홀구 공용청사건립기금 운용관인	2.1cm 정방형 문체부훈민정음		2026. 5.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인 조례 제10조
2	인천광역시미추홀구 공용청사건립기금 출납원인	1.8cm 정방형 문체부훈민정음		2026. 5.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인 조례 제10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 - 807호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주민공람 공고

우리 구 송의동 289-1번지 일원 “송의동289의1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주민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5.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1.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 내용

- 가. 명 칭: 송의동289의1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 나. 시 행 자: 송의동289의1일원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 다. 사무소 소재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송의동 203-30, 2층
- 라.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2022년 11월 ~ 2027년 10월
- 마. 신청내용
 - 상속 및 증여에 따른 조합원 2명 변경

2. 공람개요

- 가. 공람내용: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 내역
- 나. 공람기간: 2026. 5. 11. ~ 2026. 5. 25. (14일간, 토·일·공휴일 포함)
- 다. 공람장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도시정비과(☎ 032-880-448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838호

건축허가 취소 전 청문실시 및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11조제7항에 의거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착수하지 아니하는 등의 원인으로 건축허가 취소 전 청문 실시 및 의견 청취를 하고자 처분사전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소유자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5.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1. 공고기간 : 2025. 5. 11. ~ 2026. 5. 26.(15일간)
2. 공고장소 : 인천 미추홀구청 및 관할 기관 게시판(또는 구보 게재) 및 홈페이지 등
3. 처분근거 : 「건축법」 제11조제7항
4. 처분대상

연번	허가번호	대지위치	당사자(건축주)	예정처분
1	2022-건축과-신축 허가-90	주안동 91-5 외5필지	최*호	건축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
2	2022-건축과-신축 허가-91	주안동 85-9 외3필지	김*희	
3	2022-건축과-신축 허가-74	주안동 132-3 외2필지	김*석	
4			미*투자주식회사	
5	2022-건축과-신축 허가-22	주안동 66-7 외4필지	주식회사라***	
6	2021-건축과-신축 허가-123	주안동 107-7 외3필지	(주)아**개발	

5. 유의사항

-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미추홀구청 건축허가팀 (☎ 032-880-445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건축과 허가팀

○ 연 락 처 : 032-880-4457(주안동)